

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20. 5. 25.>

착 공
 준 공 통보서
 공사 중지
 공사 재개

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사업 현황	사업명	• 삼척화력 1,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	
	대표자 성명	• 옥인환	
	사업장 위치	•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	
	평가 협의일	• 2017년 12월 29일	
통보 내용	착공일	• 2018년 8월 1일	
	준공일	• 2024년 4월 30일(예정)	
	공사 중지	중지일	• 2020년 10월 23일(항만공사에 대해서만 공사중지)
		공사 재개일	• 2021년 6월 24일
		중지 사유	•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 수신 (산업통상자원부, 전력산업과-3350, 2020.10.23)
		공사중지에 따른 환경보전 조치	• 1단계 침식저감시설 둘째4기 설치 완료('21.2.10) - 조치결과 승인기관(산업통상자원부) 제출(삼척블루파워(건설) 제2021-108호, '21.3.4) 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해양환경보호 대책 이행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

착 공 을
 준 공 을
 공사 중지 (를)
 공사 재개

통보합니다.

2021년 6월 28일

사업자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(인)



승인기관의 장 · 환경부장관 귀하